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 22 선고 2020나118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 22 선고 2020나1188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합637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송기원

변론 종결2020. 11. 27.

판결 선고2021. 1. 22.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합637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상표권의 표시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3. 2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특허청 2018. 3. 30. 접수 C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서여정

판사임솔

별지